

「1Q Transfer 해외송금서비스 이용약관」 개정대비표

1. 개정시행일 : 2020년 5월 21일

2. 개정내용 : 면책조항 문구 수정 , 송금 문구 변경

| 개정 전 | 개정 후 | 비고 |
|---|---|------------|
| <p>제 3 조 (이용대상거래) 이 서비스의 이용대상거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은행은 거래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중여성송금</u> 2. <u>유학생·해외체재자 송금</u> 3. <u>외국인근로자 송금</u> | <p>제 3 조 (이용대상거래) 이 서비스의 이용대상거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은행은 거래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거주자의 중병서류 미제출 송금</u> 2. <u>유학생·해외체재자 송금</u> 3. <u>외국인근로자 국내보수송금</u> | 송금 문구 변경 |
| <p>제 12 조 (서비스 이용시간, 이용의 제한 및 중단) ①(생략)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은행의 전산 마감, 정산,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 2. 은행의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, 교체 및 고장, 통신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.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4. 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시스템 보수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5. 정전,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6. 천재지변,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<p>③ 은행은 제 2항의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지합니다.</p> | <p>제 12조 (서비스 이용시간, 이용의 제한 및 중단) ① (현행과 동일)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은행의 전산 마감, 정산,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</u> 2. <u>은행의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, 교체 및 고장, 통신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</u> 3. <u>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</u> 4. <u>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시스템 보수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</u> 5. <u>정전,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</u> 6. <u>천재지변,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</u> <p>③ <u>은행은 제2항의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지합니다.</u></p> | 면책조항 문구 수정 |
| <p>제 13 조 (면책) ① 회원이 등록한 정보의 오류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송금한 대금이 해외은행으로부터 반환되는 경우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은행이 책임지지 않습니다.</p> <p>② 천재지변,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, 화재, 통신장애, 환거래은행의 지급지연 및 기타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송금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은행이 책임지지 않습니다.</p> <p>③ 제 6조 제 9항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송금처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송금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은행이 책임지지 않습니다.</p> | <p>제13조 (책임) ①<u>은행은 회원이 등록한 정보의 오류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송금한 대금이 해외은행으로부터 반환되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②<u>은행은 정전, 화재, 통신장애, 환거래은행의 지급지연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서비스가 지연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합니다. 다만,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</u></p> | 면책조항 문구 수정 |

| | | |
|--|---|--|
| | <p><u>지지 아니합니다.</u></p> <p>③ 은행은 제6조 제 9항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송금처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송금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<u>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.</u></p> | |
|--|---|--|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: 적용